

제 1229 호
1985. 12. 19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시장 업무
편집인: 서울특별시 관공서
전화: 731-6111-3
주소: 서울특별시 종합발전실
전화: 735-3337

계	보통계정	공보계정	공보관	공보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	
제 863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	2
제 864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2
제 865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시행허가	2
제 866 호 :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운항허가	3
◎ 공 고	
제 763 호 :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 및 공사완료공람	4
제 764 호 : 관인재교부 및 폐기	4
제 765 호 : 동사무소위치변경	5
◎ 사 령	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2021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3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변경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8호(85.6.19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된 학교법인 장로회 신학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제 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와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성동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2.19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성동구 광장동 359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학교)
명칭: 장로회 신학대학 시설확충 - 기숙사 신축

다. 준공예정일

- [당 초: 85.12.31
- [변 경: 86. 3.29

라. 기타사항: 변경 없음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4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12. 20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명: 민영주택건설사업
- 2. 사업주체: 도봉 수유 370-4 법하주택 배백예외 1인
-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
가. 위치: 도봉 수유산 61-4 외 4필지
나. 면적: 4,627 m²
다. 규모: 단독 1층 24 세대
- 4. 사업시행기간: 85.11-86.10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5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변경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61 호(84.5.11)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(시장)시행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동사업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시장)변경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2. 20.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966번지 일대
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흥중앙철재종합상가
- 3)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 변경전 : 성동구 상왕실리동 103-2 최수영외 204인
 변경후 : 성동구 중곡동 120-25 최수영외 204인
- 4) 사업규모
 시행면적 : 35,864.20㎡
 건축면적 : 10,728㎡
 건축연면적 : 29,226.09㎡
- 5)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
 변경전 : 1984.5 - 1985.12.31.

- 변경후 : 1984.5-1986.12.31.
- 6)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생략
- 7)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,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: 생략
- 8) 위치 및 사업계획도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6 호

골재운반을위한선박운항허가

우리시 한강구역내에서 채취한 골재운반을 위하여 하천법 제 25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동법 제 25조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12. 21
 서울특별시장

○ 골재운반을 위한 선박운항 허가내용

점용수허가자	점용위치	점용목적	점용내역
(주)대우 (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제 5 공구시공업체)	서울특별시용산구 서빙고동 271-87 앞 성동구성수 1가 694-5 앞	골재운반	에인선 4대 바지선 4대

○ 점용허가기간 : 85.12 - 86.6.30

※ 허가기간은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변경할수 있음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63 호

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
및 공사완료 공람공고

1. 우리시가 사업시행중인 청량토지구
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토
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의 규정
에 의거 일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동
시에 같은법 제 61 조 동법 시행령
제 32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
공고를 다음과 같이하여 14 일간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이고 있다.
2. 환지확정조서 및 공사완료 도면
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
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며,
3. 환지계획변경은 확정측량에 의한
환지면적의 다소 증감 발생과 문
화재관리국등 소유토지 분할 및 청
산토지 평가위탁 결정에 대한 일
부 변경으로서 관계도서를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송
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이 공고
로 갈음한다.

1985. 12. 21.
서울특별시·장

가. 사업명 : 청량토지구획정리사업

- 나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면적 : 108,794 m²
- 라. 위치 : 동대문구 청량리동 32
번지 일대
- 마. 공사시행내역 : 생략

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764 호

관인재교부 및 폐기공고

1. 용산경찰서장의 직인을 서울특별
시 관인규칙 제 3 조 및 제 4 조의
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
부 및 폐기함을 동 규칙 제 6 조에
의하여 공고한다.

1985. 12. 21
서울특별시·장

1. 사용 및 폐기일자 : 85.12.26.
2. 사용직인 : 용산경찰서장 ㉞
3. 폐기직인 : 용산경찰서장 ㉞
4. 인 영

인	폐	기	개	각
영				
공인명	용산경찰서장의 직인		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65 호

동사무소 위치 변경 공고

다음과 같이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였기 공고한다.

1985년 12월 일
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동사무소명	이전 전	이전 후	이전일자
서울특별시성동구구의동	성동구구의동 229-10	성동구구의동 237-6	'85.10.20
" " 행당2동	" " 행당동 322-282	" " 행당동 317-19	'85.11.29
" " 동대문구전농1동	" " 동대문구전농동 553-2	" " 동대문구전농동 675-4	'85.10.29
" " 중화1동	" " 중화동 287-8	" " 중화동 287-3	'85.12.12
" " 서대문구창천동	" " 서대문구창천동 31-14	" " 서대문구창천동 4-62	'85.11.28
" " 강서구등촌2동	" " 강서구등촌동 484-12	" " 강서구등촌동 502-1	'85.12.20
" " 구로구독산2동	" " 구로구독산동 1069	" " 구로구독산동 1035-13,14	'85.12.10
" " 동작구혹석1동	" " 동작구혹석동 190-60	" " 동작구혹석동 169-34	'85.11.28
" " 강남구서초1동	" " 강남구서초동산 127-10	" " 강남구서초동산 115-38	'85.12.5

사 령

◎ 1985.12.19 일자

령제 457 호

성명	발령사항	현부서	직급
김영진	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"전체"에 처함.	박상계획과	별정 4 급상당
박명화	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항 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"전체"에 처함.	주택개발과	건축기정

◎ 1985년 12월 27일자			령제 458 호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	
강 영 조	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강동구근무를 명함	명주군 사천면 사무소	지방건축기원보	
◎ 1985년 12월 19일자			령제 459 호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	
민 문 기	중 구	목동지구개발사업소	지방행정사무관	
오 세 주	동대문구	동작구	/	
양 기 석	동작구	중 구	/	
장 수 압	마포구	동대문구	/	
문 충 실	목동지구개발사업소	마포구	/	
◎ 1985년 12월 20일자			령제 460 호	
성 명	발령부서	직 위 (호봉)	직 급	비 고
유 은 숙	청소년 사업관	부랑아전문지도원 (6호봉)	지방별정직 7급 상당	신 규
◎ 1985년 12월 19일자			령제 461 호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	
유 은 숙	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	청소년사업관 부녀상담원	지방별정직 8급상당	
◎ 1985년 12월 19일자			령제 462 호	
성 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	
김 병 하	내무국 근무를 명함	총 무 처	토목기좌	
서울특별시				